

2020년 4월 18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20. 4. 20.(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20. 4. 20.(월) 10:00 ~ 2020. 4. 22.(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20. 5. 7.(목)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상계금지 내지 제한 특약의 존재를 합부로 넓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계금지 내지 제한 특약은 약정에 참여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것이 상계금지 내지 제한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이를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 ③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 ④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문 2】 민법상 유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②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압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세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

【문 3】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②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
- ③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취득자의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 점은 추정된다.
- ④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 4】 합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 ②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민법 제272조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민법 제706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합유물인 조합재산을 처분 또는 변경합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③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④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문 5】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 ② 점유권, 유치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도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허용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문 6】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은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②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 ④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문 7】 상호명의신탁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도 있다.
- ②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
-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문 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약자 및 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제조합 등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문 9】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②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이어야 한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이 아니라 재축,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 ③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면,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문1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문11】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
- ②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적다.
-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 ④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문12】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효과가 있다.
- ④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13】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진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14】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에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 ③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반드시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문15】 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1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②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여야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고려하여야 한다.
- ③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비록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없다.

【문17】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②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 ③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문18】 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된다고 하여 양도담보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②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 ③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문19】 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② 여행업자(여행주최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직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 ④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문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다.
- ②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중중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중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중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중중의 대표자가 행한 중중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 ④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위임받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21】 소송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친족·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선임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②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 ③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 ④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문22】 전자적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 ② 원고 소송대리인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심대상사건에 관한 전자문서인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다음 등재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확인하였다면, 그 확인한 때에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등재 사실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1주 이내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 ④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문23】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의 감축은 원칙적으로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써 할 수도 있으나, 통상의 소취하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청구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철하며, 청구변경신청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 ④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문2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 주문 중 등기원인 일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누락된 경우는 모두 경정사유로 인정된다.
- ② 피고 표시 경정신청에 있어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더라도, 법원이 그 상대방을 소환하여 심문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인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③ 판결이 경정되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 ④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25】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의 소가 본소로 계속 증인데,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에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 ③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
- ④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문26】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
- ②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소 또는 소재불명으로 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형식적으로 확정시킨 경우라도 그 판결의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이 있다.

【문27】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해행위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장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
-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하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대주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도 있다.
- ③ 매도인이 원고로서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때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397조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변제기의 다음날인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일의 다음날이다.

【문28】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 ③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④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29】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이 분명하지 않아 주위적 원고인 甲은 丙을 상대로 본래의 채권에 따른 청구를 하고 예비적 원고인 乙은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소를 함께 제기하였다.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과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② 甲이 한 항변이나 증거제출은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이므로 乙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甲이 한 청구의 포기, 화해 및 소의 취하는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乙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③ 甲이 상소를 제기하면 乙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 ④ 법원은 주위적 원고인 甲의 청구를 받아들여더라도 예비적 원고인 乙에 대하여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30】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다.
- ② 주소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송달받을 사람이 항소를 제기한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뒤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이다.
- ④ 소제기시에 법인인 피고의 대표자 주소지가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제1심 재판장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그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그러한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하다.

【문31】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③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④ 소송 계속 중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수계하여도 무방하므로,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다.

【문32】소송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상 화해의 진술을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한다.
- ③ 재판상 화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 않는다.
- ④ 제1화해가 성립된 후에 그와 모순된 제2화해가 성립되면,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된다.

【문33】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위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취소·해제·상계권 등 모든 항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③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문34】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항상 수익자·전득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 뿐만 아니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도 없다.
- ③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 ④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권 등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문35】 감정과 검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의 기일에서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은 증거자료가 된다.
- ② 신청인이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측량감정이나 시가감정과 같이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 ④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36】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5천만원 또는 1억 원이므로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속한다.
- ②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사무소나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일 필요는 없지만,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그 고등법원이 아닌 그 소송사건의 제1심법원이 관할한다.
- ④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은 생길 여지가 있으나, 법원이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을 할 수는 없다.

【문37】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간주가 되어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②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③ 재판상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④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시인하는 경우, 이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닌 권리자백에 해당하므로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38】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받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인수결정이 있기까지는 기록표지에 인수참가인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 ④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39】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②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중중을 甲의 후손인 乙을 공동선조로 하는 중중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소제기 후 소장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속인들이 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된다.
- ④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문40】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② 같은 선정자단에서 여러 선정당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정당사자 모두가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 ③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모든 관계자에 의하여 또는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 ④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나 공유건물의 철거청구는 공동점유자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문 1】 장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하므로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도 장물이 된다.
- ③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 2】 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위 3동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기수, 나머지 1동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제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
- ④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이후 종전에 주장하였던 특정 권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3】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피해자가 절도범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 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4】 주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면서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 ④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문 5】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③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 이익액은 당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④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6】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②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③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 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②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 ③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한다.
- ④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문 8】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 ②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③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164조 후단(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 9】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없이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문1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 ②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 ③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④ 기존의 문서를 이용하여 이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②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④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만을 가지고는 이를 강제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정식의 증거조사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위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와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어 공판절차를 정지한 경우에는 각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다시 속행하는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심리의 도중에 판사가 바뀌면 직접주의·구술주의에 반하는 한도에서 종전의 소송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실체형성면에 관해서이고 각종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등 절차형성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를 새로이 할 필요는 없다. 또 실체형성행위에 관한 것이더라도 종전 절차에서 증인신문, 감증, 피고인신문 등을 법원이 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지므로,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면 족하며, 새로이 종전의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문13】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당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당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종료한다.
- ②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③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등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②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 ③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회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의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소 후 공소장의 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달라진 경우와는 달리 당초 착오로 합의부 심판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또는 반대로 단독판사 심판사건이 합의부에 그릇 배당된 경우에는 합의부가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을 그대로 심판하기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재배당하여야 하고 이송할 것이 아니다.
- ②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잘못 배당된 사유로 인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사건은 종국결과를 재배당으로 입력하여 종결처리하며,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위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한다.
-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지방법원 지원 관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진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문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위하여 반드시 기록상 나와 있는 피고인의 집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할 법원의 의무는 없다.
- ② 법원이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 부분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 ③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향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향고인으로 한 경우,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 ④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수소법원으로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제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를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19】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인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등과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매수신청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 매수신청의 보증금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집행관이 이 규정에 위반하여 그 액수에 미달하는 보증금만을 받고서 매수를 허가한 경우라도, 미달하는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첫 최저매각가격 결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었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문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및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되어 있던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경우 해당 저당권자는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②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관계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 ④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채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문 3】 각종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 ②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마쳐진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등 위법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④ 실체상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문 4】 부동산경매절차의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②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분리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건련성을 고려함이 없이 반드시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매각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매각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매각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④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건련성이 없으며,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문 5】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이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과나무 100그루에 열려 있는 사과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하다.
- ②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 배우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 ③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장소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더라도 그 물건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하여야 한다.

【문 6】 아래의 표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절차의 진행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감정인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 |
|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였다. |
| ㉢ 배당기일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의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
| ㉣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 |
| ㉤ 매각물건명세서를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 ㉥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다. |
| ㉦ 매각결정기일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고, 이해관계인의 항고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
|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

- ①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문 7】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②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특정승계인)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인도명령 발령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흠,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흠,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에 한정되며, 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 8】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
- ② 유체동산 압류물의 인도명령절차에서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병영·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군판사 또는 부대장이나 선장에 대한 촉탁
- ③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 ④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특별현금화명령,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의 사무

【문 9】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과 같은 대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선출기관이 그 대표자의 편에서 있어 자체적으로 해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
- ②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라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③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불실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문10】 자동차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거나, 다른 법원 소속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송받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매각기일 전에 현황조사서와 물건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11】 보전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법원에서 보전명령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그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보전처분취소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집행법원이 아닌 보전처분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12】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
- ②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 ④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문13】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무담보의 보전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나 법원이 정한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하여야 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②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위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속성과 기습성의 요구 때문에 통상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하고 있으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문14】 주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사유를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③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④ 배서가 금지된 선하증권채권의 경우 집행관이 압류명령에 따라 그 선하증권을 점유한 후에 채권자는 그 선하증권에 표창된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중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 순위 전세권자에게는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채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② 법원에 알려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때에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배당요구중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문16】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체집행과 관련한 수권결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항고인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항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문17】 부동산경매절차의 취하와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신고 후의 경매신청 취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므로,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종결되기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 ② 이중경매의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속행되므로, 매각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8】 丙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9. 10. 개시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소재)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이 7천만 원인 경우 甲, 乙, 丙의 배당금액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甲은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하여 서울지역은 2016. 3. 31. 이후 2018. 9. 17까지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일 경우 3천 400만 원에 한하여, 2018. 9. 18. 이후에는 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3천 700만 원에 한하여 우선변제권 인정]

채권자	지위	원인일자		채권액	배당액
甲	전세권자(2층)	2018. 3. 21.	설정등기	30,000,000원	
乙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1층)	2018. 8. 17.	임주·전입	70,000,000원	
丙	근저당권자	2018. 9. 20.	설정등기	40,000,000원	

- ① 甲 30,000,000원, 乙 37,000,000원, 丙 3,000,000원
- ② 甲 30,000,000원, 乙 35,000,000원, 丙 5,000,000원
- ③ 甲 30,000,000원, 乙 34,000,000원, 丙 6,000,000원
- ④ 甲 15,000,000원, 乙 35,000,000원, 丙 20,000,000원

【문19】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현금화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②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채권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판결을 제출하는 등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이후 양도되었던 채권이 채무자에게 다시 채권양도로 이전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

【문20】 아래 <보기> 중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
-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채권자
- ㉢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
- ㉤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문 1】가압류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 20]까지 같음)

- 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관하여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해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등기가 집행된 경우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해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③ 가압류의 본집행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에만 말소등기가 실행된 이후 말소된 가압류등기 이후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위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 등기관은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는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와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 기록하여서는 안 되고,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문 2】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
- ②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방형 측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측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위 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개방형 측사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A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甲과 乙이 매수인 丙과 丁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에 甲과 乙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고 丙과 丁을 등기권리자로 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3】가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만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 4】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에는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그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등에 의한 주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원인이 매매일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문 5】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 ②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한 다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횡선 아래 신탁등기의 등기목적과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 ③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압구에 한다.
- ④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주등기로 기록한다.

【문 6】상속에 따른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②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도 그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한다.
-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문 7】 부동산등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 및 대지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 0동 0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하고, 등기연월일은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날을 기록한다.

【문 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매도, 증여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 ④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도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면 이를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문 9】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 ②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등기관은 판결 이유를 고려하여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10】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일부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토지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토지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이를 실행한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 ④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문11】 甲은 대여금채권 5천만 원에 기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乙은 해방공탁금 5천만 원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관에게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물품대금채권 5천만 원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관에게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③ 공탁자 乙의 다른 채권자 丙은 어음금채권 5천만 원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관에게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다.
- ④ 공탁자 乙은 가압류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했다면 공탁 당시로 소급해서 채무액 전액에 대해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공탁신청의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은 공탁관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지시받은 즉시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확지공탁을 할 수 있고,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한다.
- ④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 · 공탁 20문】

①책형

【문13】 외국인, 재외국민과 관련된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청구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이 공탁신청을 할 때에는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 ㉡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외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인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 ㉣ 공탁관은 공탁금지급과 관련하여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 ② ㉠, ㉡ ③ ㉠, ㉡, ㉢ ④ ㉠, ㉡, ㉢, ㉣

【문14】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 제출된 때 사유신고를 한다.
- ②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하여 배당액의 지급위탁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액에 대한 지급제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때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후에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문15】 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고, 양수인에게 전액을 변제할 수도 있다.
- ② 채권에 관해 가압류 후에 양도가 있어서 혼합공탁한 경우가 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고, 추심명령까지 얻으면 추심채권자는 공탁소에서 출급할 수 있다.
- ③ 혼합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양수인에게만 공탁통지를 하된다.
- ④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문16】 강제경매 배당액의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48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 ②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가 있으면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공탁을 하여 취급점으로부터 공탁서를 반환받은 때에는 배당표 등본이 첨부된 공탁서 원본과 함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 ④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공무원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문17】 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제결에서 보상금을 증액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 제기 전에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이의유보를 해서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으로 공탁한 경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피수용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로 되어 있고, 그와 다른 주소지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문18】 다음 <보기> 중 공탁소에서 甲에게 담보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피공탁자 甲이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 ㉡ 피공탁자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甲의 채권자가 압류한 후에 甲이 담보권 실행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경우
- ㉢ 담보공탁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된 후 담보권리자 甲이 피담보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전부를 한 경우
- ㉣ 담보공탁의 피공탁자 甲이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해서 출급청구하는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문19】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므로 판결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
- ③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 ④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할 수 있다.

【문20】 다음은 상대적 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에 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A).
- ㉡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합유자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B).
- ㉢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서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또는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인증명서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C).
- ㉣ 토지수용절차에서 피공탁자를 망 소유자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 이후에 상속인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D).

- | | A | B | C | D |
|---|----|----|----|----|
| ① | 없다 | 있다 | 없다 | 없다 |
| ② | 없다 | 없다 | 없다 | 있다 |
| ③ | 있다 | 있다 | 없다 | 있다 |
| ④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2020년 4월 18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20. 4. 20.(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20. 4. 20.(월) 10:00 ~ 2020. 4. 22.(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20. 5. 7.(목)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합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 ②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민법 제272조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민법 제706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합유물인 조합재산을 처분 또는 변경합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③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④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문 2】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 ② 점유권, 유치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도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허용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문 3】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②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 ④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문 4】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상계금지 내지 제한 특약의 존재를 함부로 넓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계금지 내지 제한 특약은 약정에 참여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것이 상계금지 내지 제한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이를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 ③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 ④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문 5】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②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압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세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

【문 6】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②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
- ③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취득자의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 점은 추정된다.
- ④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 7】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②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이어야 한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이 아니라 재축,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 ③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면,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문 8】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문 9】상호명의신탁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도 있다.
- ②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
-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문10】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약자 및 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제조합 등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문11】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에서 그 전제조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 ③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반드시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문12】 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1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②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여야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고려하여야 한다.
- ③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비록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없다.

【문14】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
- ②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적다.
-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 ④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문15】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효과가 있다.
- ④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주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17】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②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 ③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문18】 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된다고 하여 양도담보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②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 ③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문19】 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② 여행업자(여행주최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직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 ④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문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다.
- ②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중중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중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중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중중의 대표자가 행한 중중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 ④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위임받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21】 소송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친족·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선임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②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 ③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 ④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문22】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의 소가 본소로 계속 중인데,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에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 ③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
- ④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문23】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
- ②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소 또는 소재불명으로 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형식적으로 확정시킨 경우라도 그 판결의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이 있다.

【문24】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해행위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장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
-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하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대주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도 있다.
- ③ 매도인이 원고로서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때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397조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변제기의 다음날인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일의 다음날이다.

【문25】 전자적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 ② 원고 소송대리인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재심대상사건에 관한 전자문서인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다음 등재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확인하였다면, 그 확인한 때에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등재 사실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1주 이내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 ④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문26】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의 감축은 원칙적으로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써 할 수도 있으나, 통상의 소취하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청구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철하며, 청구변경신청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 ④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문27】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 주문 중 등기원인 일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누락된 경우는 모두 경정사유로 인정된다.
- ② 피고 표시 경정신청에 있어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더라도, 법원이 그 상대방을 소환하여 심문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인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③ 판결이 경정되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 ④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28】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③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④ 소송 계속 중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수계하여도 무방하므로,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다.

【문29】 소송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상 화해의 진술을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한다.
- ③ 재판상 화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 않는다.
- ④ 제1화해가 성립된 후에 그와 모순된 제2화해가 성립되면,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된다.

【문30】 배당이익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익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위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취소·해제·상계권 등 모든 항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③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문31】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 ③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④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32】 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이 분명하지 않아 주위적 원고인 甲은 丙을 상대로 본래의 채권에 따른 청구를 하고 예비적 원고인 乙은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소를 함께 제기하였다.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과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② 甲이 한 항변이나 증거제출은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이므로 乙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甲이 한 청구의 포기, 화해 및 소의 취하는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乙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③ 甲이 상소를 제기하면 乙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 ④ 법원은 주위적 원고인 甲의 청구를 받아들이다라도 예비적 원고인 乙에 대하여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33】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다.
- ②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송달받을 사람이 항소를 제기한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뒤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이다.
- ④ 소제기시에 법인인 피고의 대표자 주소지가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제1심 재판장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그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그러한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하다.

【문34】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 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간주가 되어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②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③ 재판상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④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시인하는 경우, 이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닌 권리자백에 해당하므로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35】 승계참가인 승계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받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인수결정이 있기까지는 기록표지에 인수참가인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 ④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간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36】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②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중증을 甲의 후손인 乙을 공동선조로 하는 중증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소제기 후 소장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속인들이 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된다.
- ④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문37】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면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항상 수익자·전득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 뿐만 아니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도 없다.
- ③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 ④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권 등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문38】 감정과 검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의 기일에서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은 증거자료가 된다.
- ② 신청인이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측량감정이나 시가감정과 같이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 ④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39】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5천만원 또는 1억 원이므로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속한다.
- ②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사무소나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일 필요는 없지만,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그 고등법원이 아닌 그 소송사건의 제1심법원이 관할한다.
- ④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은 생길 여지가 있으나, 법원이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을 할 수는 없다.

【문40】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② 같은 선정자단에서 여러 선정당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정당사자 모두가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 ③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모든 관계자에 의하여 또는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 ④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나 공유건물의 철거청구는 공동점유자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문 1】 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면서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 ④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문 2】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자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자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③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당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④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임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3】 장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하므로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도 장물이 된다.
- ③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 4】 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위 3동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기수, 나머지 1동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제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
- ④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이후 종전에 주장하였던 특정 권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다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5】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피해자가 절도범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 ②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③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164조 후단(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 7】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없이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문 8】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②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③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 9】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②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 ③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한다.
- ④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문1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 ②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 ③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④ 기존의 문서를 이용하여 이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②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④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만을 가지고는 이를 강제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정식의 증거조사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위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와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어 공판절차를 정지한 경우에는 각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다시 속행하는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심리의 도중에 판사가 바뀌면 직접주의·구술주의에 반하는 한도에서 종전의 소송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실체형성면에 관해서이고 각종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등 절차형성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를 새로이 할 필요는 없다. 또 실체형성행위에 관한 것이더라도 종전 절차에서 증인신문, 검증, 피고인신문 등을 법원이 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지므로,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면 족하며, 새로이 종전의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문13】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당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당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더라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종료한다.
- ②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③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등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위하여 반드시 기록상 나와 있는 피고인의 집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할 법원의 의무는 없다.
- ② 법원이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있음을 알지 못한채,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 부분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 ③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향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향고인으로 한 경우,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 ④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②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 ③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의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문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소 후 공소장의 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달라진 경우와는 달리 당초 착오로 합의부 심판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또는 반대로 단독판사 심판사건이 합의부에 그릇 배당된 경우에는 합의부가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을 그대로 심판하기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재배당하여야 하고 이송할 것이 아니다.
- ②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잘못 배당된 사유로 인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사건은 종국결과를 재배당으로 입력하여 종결처리하며,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위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한다.
-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지방법원 지원 관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진다.

【문18】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수소법원으로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1】 각종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 ②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마쳐진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등 위법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④ 실체상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문 2】 부동산경매절차의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②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분리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건련성을 고려함이 없이 반드시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매각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매각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매각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④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건련성이 없으며,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문 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인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등과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매수신청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 매수신청의 보증금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집행관이 이 규정에 위반하여 그 액수에 미달하는 보증금만을 받고서 매수를 허가한 경우라도, 미달하는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첫 최저매각가격 결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문 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및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되어 있던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경우 해당 저당권자는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요구의 중기 이후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②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관계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 ④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채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문 5】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
- ② 유체동산 압류물의 인도명령절차에서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병영·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군판사 또는 부대장이나 선장에 대한 촉탁
- ③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 ④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특별현금화명령,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의 사무

【문 6】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과 같은 대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선출기관이 그 대표자의 편에 서 있어 자체적으로 해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
- ②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라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③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불실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문 7】 자동차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거나, 다른 법원 소속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송받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매각기일 전에 현황조사서와 물건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 8】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이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과나무 100그루에 열려 있는 사과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하다.
- ②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 배우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 ③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장소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더라도 그 물건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하여야 한다.

【문 9】 아래의 표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절차의 진행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감정인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 |
|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였다. |
| ㉢ 매각기일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의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
| ㉣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 |
| ㉤ 매각물건명세서를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 ㉥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다. |
| ㉦ 매각결정기일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고, 이해관계인의 항고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
|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

- ①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문10】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②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특정승계인)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인도명령 발령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흠,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흠,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에 한정되며, 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11】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무담보의 보전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나 법원이 정한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하여야 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②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위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속성과 기습성의 요구 때문에 통상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하고 있으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문1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사유를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③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④ 배서가 금지된 선하증권채권의 경우 집행관이 압류명령에 따라 그 선하증권을 점유한 후에 채권자는 그 선하증권에 표창된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13】 보전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법원에서 보전명령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그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보전처분취소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집행법원이 아닌 보전처분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14】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
- ②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킨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 ④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0문】

②책형

【문15】丙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9. 10. 개시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소재)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이 7천만 원인 경우 甲, 乙, 丙의 배당금액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甲은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하여 서울지역은 2016. 3. 31. 이후 2018. 9. 17.까지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일 경우 3천 400만 원에 한하여, 2018. 9. 18. 이후에는 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3천 700만 원에 한하여 우선변제권 인정]

채권자	지위	원인일자		채권액	배당액
甲	전세권자(2층)	2018. 3. 21.	설정등기	30,000,000원	
乙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1층)	2018. 8. 17.	입주·전입	70,000,000원	
丙	근저당권자	2018. 9. 20.	설정등기	40,000,000원	

- ① 甲 30,000,000원, 乙 37,000,000원, 丙 3,000,000원
- ② 甲 30,000,000원, 乙 35,000,000원, 丙 5,000,000원
- ③ 甲 30,000,000원, 乙 34,000,000원, 丙 6,000,000원
- ④ 甲 15,000,000원, 乙 35,000,000원, 丙 20,000,000원

【문16】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현금화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②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채권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판결을 제출하는 등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이후 양도되었던 채권이 채무자에게 다시 채권양도로 이전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

【문17】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 순위 전세권자에게는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채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② 법원에 알려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준부·원인 및 금액을,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때에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문18】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체집행과 관련한 수권결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항고인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항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문19】부동산경매절차의 취하와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신고 후의 경매신청 취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므로,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종결되기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 ② 이중경매의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속행되므로, 매각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20】 아래 <보기> 중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
-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채권자
- ㉢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
- ㉤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문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첨부정본이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에는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그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등에 의한 주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원인이 매매일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문 2】 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대특약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 환대특약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 ②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가전등기를 한 다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횡선 아래 신탁등기의 등기목적과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 ③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 ④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주등기로 기록한다.

【문 3】 상속에 따른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②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도 그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한다.
-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문 4】 가압류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관하여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해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등기가 집행된 경우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해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③ 가압류의 본집행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에만 말소등기가 실행된 이후 말소된 가압류등기 이후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위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 등기관은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의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 기록하여서는 안 되고,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문 5】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
- ②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방형 측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측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권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위 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개방형 측사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권을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A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甲과 乙이 매수인 丙과 丁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에 甲과 乙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고 丙과 丁을 등기관리자로 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6】 가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만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 7】 부동산등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 및 대지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 0동 0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하고, 등기연월일은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날을 기록한다.

【문 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 ④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도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면 이를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문 9】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 ②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등기관은 판결 이유를 고려하여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10】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일부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토지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토지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이를 실행한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 ④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문11】 甲은 대여금채권 5천만 원에 기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乙은 해방공탁금 5천만 원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관에게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물품대금채권 5천만 원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관에게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③ 공탁자 乙의 다른 채권자 丙은 어음금채권 5천만 원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관에게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다.
- ④ 공탁자 乙은 가압류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했다면 공탁 당시로 소급해서 채무액 전액에 대해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공탁신청의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은 공탁관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지시받은 즉시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확지공탁을 할 수 있고,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한다.
- ④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 · 공탁 20문】

②책형

【문13】 강제경매 배당액의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48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 ②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가 있으면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공탁을 하여 취급점으로부터 공탁서를 반환받은 때에는 배당표 등본이 첨부된 공탁서 원본과 함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 ④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공무원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문14】 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결결에서 보상금을 증액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 제기 전에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이의유보를 해서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으로 공탁한 경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피수용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로 되어 있고, 그와 다른 주소지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문15】 다음 <보기> 중 공탁소에서甲에게 담보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피공탁자 甲이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 ㉡ 피공탁자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甲의 채권자가 압류한 후에 甲이 담보권 실행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경우
- ㉢ 담보공탁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된 후 담보권리자 甲이 피담보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전부를 한 경우
- ㉣ 담보공탁의 피공탁자 甲이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해서 출급청구하는 경우

- ① ㉠, ㉡ ② ㉠, ㉢ ③ ㉡, ㉣ ④ ㉢, ㉣

【문16】 외국인, 재외국민과 관련된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청구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이 공탁신청을 할 때에는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 ㉡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외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예컨대 일본)인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 ㉣ 공탁관은 공탁금지급과 관련하여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① ㉠ ② ㉡, ㉢ ③ ㉡, ㉢, ㉣ ④ ㉢, ㉣, ㉤, ㉥

【문17】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 제출된 때 사유신고를 한다.
- ㉡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하여 배당액의 지급위탁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액에 대한 지급제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때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 ㉢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문18】 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고, 양수인에게 전액을 변제할 수도 있다.
- ㉡ 채권에 관해 가압류 후에 양도가 있어서 혼합공탁한 경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고, 추심명령까지 얻으면 추심채권자는 공탁소에서 출급할 수 있다.
- ㉢ 혼합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양수인에게만 공탁통지를 하면 된다.
-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문19】 다음은 상대적 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에 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A).
- ㉡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합유자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B).
- ㉢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서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또는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인증명서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C).
- ㉣ 토지수용절차에서 피공탁자를 망 소유자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 이후에 상속인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D).

- | | A | B | C | D |
|---|----|----|----|----|
| ① | 없다 | 있다 | 없다 | 없다 |
| ② | 없다 | 없다 | 없다 | 있다 |
| ③ | 있다 | 있다 | 없다 | 있다 |
| ④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문20】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므로 판결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
- ③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 ④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할 수 있다.

2020년 4월 18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20. 4. 18.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민 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10. 1. 1. 건축업자 乙과 사이에 X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0. 12. 31., 공사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2010. 5. 31. 설비업자인 丙과 사이에 X주택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를 공사기간 2010. 10. 30., 공사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2010. 8. 31.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乙, 丙은 공사기한에 맞춰 공사를 마쳤고 乙은 2011. 3. 31. 丙에게 하도급공사대금 및 대여금 지급에 갈음하여 甲에 대한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문항별로 각각 독립적임)

1. 채권양도 이후 乙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甲에 의한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丙이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으로서 직접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서술하시오. [10점]
2.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2011. 4. 5.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고, 2011. 5. 1. 乙과 丙은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된 사실을 알지 못한 甲은 2011. 5. 30. 양수인 丙에게 공사대금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를 서술하시오. [10점]
3.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채권양도일 무렵에 甲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2011. 6. 1. 완공된 X주택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에는 5천만 원이 소요된다. 甲은 양수인 丙에게 乙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양도채권인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상계주장의 인용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4. **[추가된 사실관계]** 甲과 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乙은 甲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乙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하청, 위탁 및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乙은 丙에게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丙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丙은 그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고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乙이 甲에 대한 양도통지를 마치자 丙은 甲에게 채권양도받은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가. 甲이 丙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5점]**

나. 만약 丁이 丙으로부터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재차 양도받으면서 위 계약서를 따로 교부 받지 않은 채 기재문구를 전해 듣지도 못한 경우 丙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甲이 丁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5점]**

【문 2】

1. 다음의 각 사례에서 甲이 청구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간 및 완성 여부를 서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乙은 2010. 12. 31.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甲은행으로부터 원금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출받았다. 乙은 원금 및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행은 2020. 1. 15. 乙에 대한 대출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10점]**

나.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00. 1. 1. 매수인 乙과 매매대금 1억 원을 대금지급일 2000. 5. 31.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은 지급일 이후에도 각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고, 甲은 2005. 5. 3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다. 甲은 2012. 1. 1.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 및 2005. 6. 1.부터의 민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10점]**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대여금채권은 2010. 1. 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각 설문은 독립적임).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를 나누어 각 변제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5점]**

나. 2011. 1. 1.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 乙에게 5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배당기일에서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서술하시오. **[10점]**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17. 9. 1. 乙에게 장차 신축할 X주택을 분양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였다. 乙은 계약시에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19. 9. 1. 주택의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19. 12. 1. 오전 10시에 A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분양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9. 9. 1.에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9. 9. 10. 丙과 위 주택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9. 10. 1. 위 주택을 인도받아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1. 위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가? 丙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는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잔금기일에 A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는데, 乙은 대출이 막혀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잔금 기일을 2020. 1. 10.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이 요청을 거절하면서 2019. 12.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제할 것이며 그때까지 등기서류 일체를 그대로 A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겠다며 돌아갔다. 乙은 결국 2019. 12.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이 2019. 12. 16. 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주택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전제할 때,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丙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에 대하여 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丙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甲은 자력이 충분한 乙에게 보증채무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丙이 乙측에 보조참가를 하여(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함)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20. 1. 16. 乙에게, 2020. 1. 29. 丙에게 각 송달되었다.

(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변경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추가된 사실관계]** 丙이 2020. 2. 5.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당시까지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丙의 위 항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2점]
2. **[추가된 사실관계]** 丙이 2020. 1. 28.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丙이 제기한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위 항소취하가 유효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3점]
3.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자신이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丙은 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乙이 丙의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적은 없음), 위 증거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위 증거들이 제1심법원에 현출되었다. 이 경우 제1심법원은 위 증거들에 터잡아 乙이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3점]
4. **[변경된 사실관계]**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 乙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丙에게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구상금청구의 소에서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2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주소 : 대전)은 乙(주소 : 대구)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자기 소유인 춘천시 소재 토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의 가액 : 1억 6천만 원]를 丙(주소 : 인천)에게 매도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甲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丙을 피고로 하여 乙과 丙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려고 한다.

(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자신의 주소지인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토지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은 고려하지 말 것). **[8점]**
2. **[추가된 사실관계]**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구하는 소를 이 사건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얼마인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7점]**

【문 3】

甲이 인지, 송달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장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甲이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제1심 재판장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020년 4월 18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20. 4. 18.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

법

【문 1】

【사실관계】

甲은 3층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甲은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건물을 방문하여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하곤 하였다. 다만 2019년 초부터는 딸의 병간호 때문에 건물을 방문하지 못하였다.

A는 2019. 10. 12. 위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나오면서 신발 끈을 묶기 위하여 2층 계단참 벽면에 기대었다. 그러자 그 벽면이 건물 밖 쪽으로 그대로 분리되어 떨어졌고, 이에 따라 A 역시 밖으로 함께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A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알고 보니 위 건물 2층 계단참 벽면은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었고, 별도의 고정장치 없이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 실리콘 접착제마저도 부식되어 있는 상태였다.

甲에게 위 건물 2층 계단참 벽면의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A의 추락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甲에게 그 추락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할 경우, 甲이 A의 상해에 대하여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는지 아니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지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20점]

【문 2】

甲은 2013. 7. 31. 乙에게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A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3. 10. 2. 乙에게 A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넘겨주었다. 위 유체동산들은 A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甲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5점]

【문 3】

다음 각 사안의 경우 甲이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각 서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름).

1. 甲은 乙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A토지 중 1/2 지분을 乙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B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A토지에 B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5점]
2. 甲은 ‘인쇄기’를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10점]
3. 甲은 乙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3. 10. 24.경 乙에게 甲의 모친 소유의 A토지와 B건물 중 甲의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18. 2. 1.경 자신 앞으로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甲은 2018. 2. 7.경 A토지를 누나에게 1억 8,200만 원에, B건물을 매형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10점]

【문 4】

다음 각 사안의 甲과 乙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각 논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甲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甲은 2017. 2. 27. 02:10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부터 같은 시 용금로에 있는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017. 2. 2.자 음주운전과 2017. 2. 27.자 음주운전은 동시에 기소되어 함께 재판 받음). [10점]
2. 乙은 2006. 9. 28. 의정부지방법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고, 200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乙은 2016. 10. 9. 03: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O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점]

【문 5】

甲은 乙이 甲으로부터의 연락과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9. 8. 2.부터 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乙의 의사와 상관없이 乙과 교제하고 싶다고 조르다가, 모든 것이 乙의 잘못이라며 乙을 강하게 탓하고, 甲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乙과 그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전화번호의 수신을 차단하여 위 문자메시지들은 모두 乙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0점]

2020. 4. 18.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문 1】

공소제기의 적법성 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각 물음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 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한다. 검사는 해남지원이 아닌 본원인 광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2. 검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저작물을 대량 업로드 하였다는 내용의 저작권법위반죄의 공소를 제기하면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범죄일람표 중 일부만 출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고, 나머지는 엑셀 파일이 담긴 CD로 첨부하였다. 다만 공소장에 서면으로 첨부된 범죄일람표 말미에 ‘종이 문서로 출력할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CD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CD 첨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 위 CD 첨부 부분도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3.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모두 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위 모두 사실 부분이 범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하여 심리하지 않겠다고 이미 고지하였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판단의 적법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문 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각 물음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법원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국민참여재판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항소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의 적법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2. 법원은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신청 의사 확인에 관한 서면 등을 송달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적법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선고기일에 재판장은 피고인 甲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선고하였고 검사는 판사가 교부한 판결선고 결과(석방확인서)에 따라 피고인 甲의 석방을 지휘하였다.

1. 위 기본사실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언제까지, 무엇을, 누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5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선고기일에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치가 위법함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검사의 항소가 타당한지 여부 및 그 이유를 밝히고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5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시행일:2019.3.28]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제148조의2(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8.3.27>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전문개정 2011.6.8][시행일:2019.3.28]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